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규정

제정 1988.10. 7 개정 1997. 1. 1
 개정 1992. 3. 1 개정 1998.12.24
 개정 1994. 3. 1 개정 2001. 6. 1
 개정 1994. 6.18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의거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액화석유가스의 저장, 사용시설의 안전유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이하 “저장소”라 한다)에 관계되는 교직원 및 외부인에게 적용된다.

② 본 대학의 저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NO1 Power Plant
2. NO2 Power Plant

③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 3 조(대학의 책임) ① 본 대학은 가스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법을 준수하며, 적절한 시설 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 책임자의 권고 및 의견을 존중한다.

② 본 대학은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적합한 권한을 부여하고 사고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4 조(안전관리자의 선임) ① 본 대학은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안전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둔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총괄자, 안전관리부총괄자, 안전관리책임자로 구분한다.

③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인원은 동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총장은 안전관리자가 채용, 해임 및 퇴직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관청에 신고 하여야 하고, 또한 해임 및 퇴직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채용 하여야 한다.

⑤ 본 대학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조직은 제6조와 같다.

제 5 조(관련직원의 의무) 본 대학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취급하는 모든 교직원은 가스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제 6 조(안전관리조직)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안전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다음의 조직을 둔다.

제 7 조(안전관리자별 직무) ① 안전관리총괄자는 본 대학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 안전관리부총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며 본 대학 가스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한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가 없는 경우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며 저장소의 안전에 관한 모든 활동을 통제·감독하고 또한 기술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2. 시설의 순회점검과 정기·자체검사를 실시 또는 감독하고 기록한다.
3. 수리작업원을 지휘·감독하며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총괄자의 승인을 받아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4. 안전관리총괄자 및 부총괄자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이상 상태가 발생시 응급조치 등을 하고 보고한다.
5. 저장시설의 안전한 운전 및 조작을 하도록 작업원에게 주지시키며 공사와 수리를 할 때에는 작업결과를 확인한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서 불안정한 시설 및 행동요인은 시정 조치한다.
6. 시·도지사가 행하는 정기 및 자체검사에 입회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④ (삭제)

제 8 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및 책임한계) ① 안전관리자는 제7조에 정한 직무범위를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저장소의 가스시설 및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실시 및 그 검사 기록의 작성·보존
4. 법 제35조의 2 규정에 의한 사고의 통보
5. 저장소의 관련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감독

② 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안전관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9 조(안전관리자의 근무방법) 안전관리자는 사업장내의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타 근무자들의 업무를 정하여 주고, 가스관련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고 내용을 기록·유지한다.

1.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2. 가스관련 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

3. 저장소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안전관리의 직무이행) ① 총장은 안전관리자가 여행 및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를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안전관리총괄자의 직무대행은 안전관리부총괄자, 안전관리부총괄자의 직무대행은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은 본 대학 저장소의 직원중 가스취급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자가 하도록 한다.

제11조(점검방법)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시설의 기술상 기준대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매일 1회씩 점검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7에서 규정하는 저장소의 시설 및 기술기준에 의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점검의 내용을 기록하여 그 결과는 안전관리부총괄자 또는 안전관리총괄자에게 보고한다.

제12조(수리, 보수 및 철거방법) 점검결과 시설의 수리,보수 및 철거를 요하는 사항은 안전관리책임자가 문서화하여 안전관리부총괄자 또는 총괄자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보한 후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외부인에게 수리, 보수 및 철거에 관한 도급공사를 준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수리, 보수 및 철거를 요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표시 또는 보호조치
2. 수리, 보수 및 철거 공사계획서 작성
3. 수리, 보수 및 철거 공사책임자 지정
4. 방폭전기설비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
5. 수리, 보수 및 철거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
6. 수리, 보수 및 철거 공사후의 검사실시와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점검, 수리, 보수 및 철거 등에 관한 사항 기록·보존) 가스시설의 점검, 수리, 보수 및 철거 등에 관한 사항과 수리, 보수 및 철거후 이상 유무 확인에 필요한 검사와 시험의 결과에 관한 사항은 일정양식에 의거 안전관리책임자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안전관리총괄자는 이를 3년간 보존한다.

제14조(자체검사의 시기 및 대상) 안전관리책임자는 최초 자체검사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매6월이 되는 날(최초 자체검사는 그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의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3월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본 대학의 가스시설에 대하

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제15조(자체검사의 대행) ① 본 대학의 자체검사 시설 미비 또는 기술인력 부족으로 자체 검사가 곤란할 경우에는 자체검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허가 관청의 승인을 얻어 자체 검사대행을 할 수 있는 검사기관에 대행시켜 자체검사를 실시토록 한다.

② 대행검사기관에서의 자체검사결과 합격판정일 경우에는 대행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검사필증을 교부받아 자체검사기록과 함께 보존하며, 불합격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조속히 시정하여 동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한다.

제16조(교육대상 및 방법) ① 교육은 정기교육과 특별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교육은 가스관련자를 대상으로 월1회 이상 실시하며 특별교육은 신입직원 또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안전관리책임자가 인정하는 관련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교육책임자로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교재 및 자료를 작성·비치한다.

④ 교육과정중 년1회 이상 재해발생의 경우를 대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며 예상된 재해규모에 따른 긴급조치훈련 활동에 본 대학은 적극 참여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과정의 목적
2. 교육훈련과정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내용
3. 설비·기구등의 취급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4. 가스의 성질 및 취급방법
5. 안전장치, 각종 보호구 등의 취급 요령
6. 위해예방 조치 사항
7. 응급조치 및 복구에 관한 사항
8. 기타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

제18조(교육기록의 작성·보존)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교육실시 내용을 일정양식에 의거 기록·작성하고 안전관리총괄자는 이를 3년간 보존하며, 그 교육내용에 대한 참석자들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② 안전관리총괄자는 반드시 교육기록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되도록 한다.

제19조(위해예방조치) ① 항상 사고의 우려가 있는 저장탱크실 용기저장실에는 불필요한 인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출입금지표시를 하고, 각종 안전장치 및 소화설비등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항상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점검한다.

② 저장실의 보기 쉬운 곳에 반드시 안전수칙을 정하여 게시하고 준수하도록 계도한다.

제20조(위해발생시의 보고체제 및 요령) 비상연락망 및 유관기관 신고체제는 별표1과 같으며, 위해발생시는 발생일시, 장소, 피해상황, 조치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 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한다.

제21조(위해발생시의 조치) ① 긴급사태의 조치 및 통제요령은 별표2와 같으며 비상훈련은 6개월에 1회 이상 교육시 실시한다.

② 위해발생시를 대비하여 관련자들의 비상연락망 등을 수시로 확인, 정비함으로써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

③ 응급조치 및 복구를 위한 시설, 장비는 항상 활용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한다.

④ 통제조직은 안전관리조직과 같으며, 안전관리총괄자 또는 안전관리부총괄자가 최고책임자가 되고 안전관리책임자는 부책임자가 되어 최고책임자를 보좌한다.

제22조(기록·보존) 위해발생에 대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은 일정양식의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예방점검 및 위해발생시의 제반조치 사항등은 안전관리책임자가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시설의 안전점검표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후 3년간 보존한다.

제23조(검사장비 관리자별 직무) 검사장비 유지관리 및 운용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총괄자 또는 부총괄자를 관리총괄자로, 안전관리책임자를 관리책임자로 하여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총괄자는 검사관리의 유지관리·보수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2.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목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검사장비의 유지관리 및 보수(검·교정)등에 관한 사항

나. 검사장비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 및 훈련

다. 검사장비 사용현황 및 상태 파악

라. 검사장비대장 및 이력카드등의 기록상태 점검

마. 안전수칙, 안전표시, 운전요령등의 제조치등

바. 검사장비의 안전사용

사. 검사장비 이상시의 응급조치(보수) 및 보고

아. 검사장비의 정리정돈 및 보관

자. 검사장비에 대한 각종 점검 및 기록 유지

차. 검사장비대장과 이력카드등의 기록유지

카. 기타 관리책임자가 검사장비 업무상 지시하는 사항 등

3. (삭제)

제24조(장비점검) 관리책임자는 주1회 이상 검사장비관리 및 운영상태를 점검하여 항상 정상 작동토록 하고, 필요시 즉시 활용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25조(검·교정) ① 관리책임자는 중요기계 및 계측기류등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교정을 실시한다.

② 본 대학의 자체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③ 가스시설의 자체검사항목 및 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7에서 규정한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을 준용한다.

제26조(관리감독) 안전관리책임자는 시설의 안전 유지 및 시설설치공사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본 대학을 출입하는 외부인 및 하청업체 등일 행하는 공사의 책임범위 및 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준수토록 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본 대학의 시설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한다.

제27조(의무 및 책임) ① 본 대학은 외부업체와의 계약시 외부업체의 의무 및 책임사항을 협의하여 정하고 위반시 벌칙등에 관하여 명확히 문서화하여 외부업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② 외부인 및 외부업체 종사자는 사고발생 즉시 조치하고,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한다.

제28조(안전관리 위반 행위자에 대한 조치) 안전관리책임자는 관련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직무지시 및 수행을 거부한 때에는 그 위반사실 및 직무거부 사실을 서면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안전관리자의 해임) 총장은 안전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자를 해임시켜야 한다.

1. 이동에 의한 전출
2. 직원인사규정 제25조에서 제29조까지 해당될 때
3. 질병에 의한 결근,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그 직무 수행이 부적합한 때
4. 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위반한 때

제30조(타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 이외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6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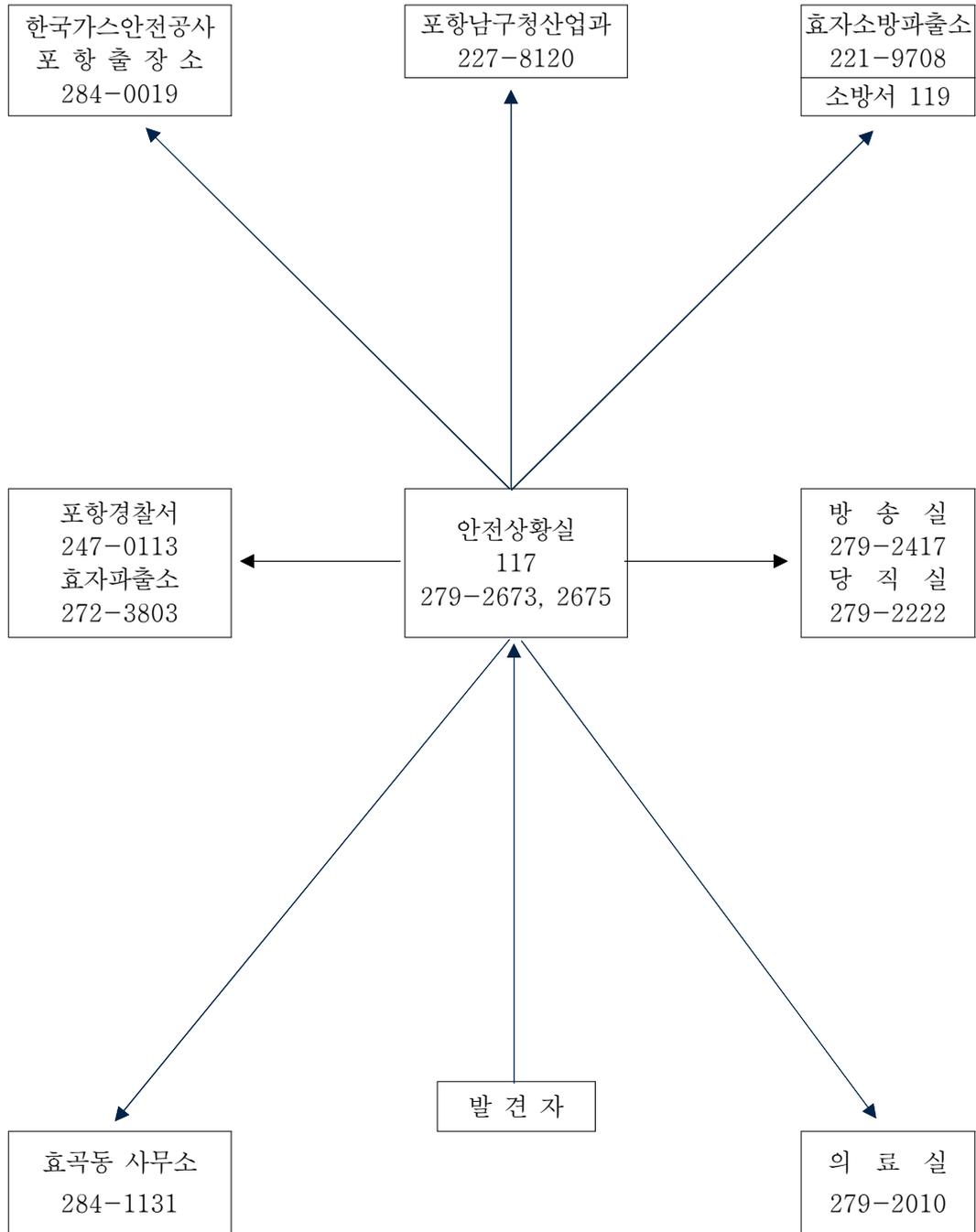
이 규정은 1998년 12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1)

대외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별표2)

긴급사태시의 조치 및 통제요령

1. 긴급사태 발생시 소집방법

가. 발견통보 : 재해의 발생 및 인근의 화재를 발견할 경우 신속히 구조를 요청함과 동시에 즉시 안전관리총괄자, 안전관리책임자등 비상연락망 연락체계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통보한다.

나. 피 난 : 사람이 모이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피난하면서 위험발생 신호를 계속하여 보낸다.

다. 긴급안전장치 : 긴급히 운전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재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의 화재를 발견한 경우는 안전관리총괄자 또는 작업책임자의 명령과 동시에 즉시 정지 조치를 한다.

라. 재해현장의 응급조치 : 재해발생 및 인근의 화재발생시 응급조치는 안전관리조직 계통의 지시에 따른다.

2. 위해발생시의 응급조치사항

가. 일반사항

- (1) 가스위해 발생지역 주위에 경계표지판 및 경계기를 설치하고, 출입을 금지시킨다.
- (2) 점검장비로 가스누출부위를 조사한다.
- (3) 독성가스 누출시에는 방독마스크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작업한다.
- (4) 물을 살수할 때에는 누출부위에 가마니등을 덮어 흡수가 잘되게 조치한다.
- (5)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구급차의 출동을 요청한다.

나. 세부사항

- (1) 탱크자체 또는 탱크 배관에서 가스누출시
 - 긴급차단장치 및 밸브를 잠그고 사용을 중지한다.
 - 누출부위에는 납마개·고무시트 또는 납박킹을 씌우거나 박아 넣어 가스의 분출을 막고 가스누출 검지기로 누출여부를 확인한다.
 - 가연성물질은 신속히 제거한다.
 -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화기로 소화하고, 부근의 탱크에 물을 살수하여 온도상승을 막는다.
- (2) 용기접합장치에서 가스누출시

- 용기밸브를 잠그고 사용을 중지시킨다.
- 누출부위에는 납마개·고무시트 또는 납박킹을 씌우거나 박아 넣어 가스의 분출을 막고 가스누출 검지기로 누출여부를 확인한다.
- 밸브 연결부에서 누출할 경우에는 누출부위를 위쪽으로 하고 스패너로 밸브를 단단히 조이고 가스누출검지기로 누출여부를 확인한다.
- 가연성물질은 신속히 제거한다.
- 통풍이 양호하도록 하여 폭발(연소)범위 농도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다.
-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화기로 소화하고, 화염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용기는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3) 배관에서 가스누출시

- 배관의 밸브를 잠그고 사용을 중지시킨다.
- 누출부위에는 납마개·고무시트 또는 납박킹을 씌워 가스의 분출을 막는다.
- 화기나 유지류등의 가연성물질을 신속히 제거한다.

3. 긴급조치훈련

안전관리총괄자는 훈련계획을 세워 예상된 재해에 따른 긴급조치훈련등을 교육시 병행 실시한다.